성주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일자 : 2017년 월 일
제 출 자 : 성 주 군 수

1. 개정이유

○ 상위법인 「성별영향분석평가법」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의 선정 방법 신설(안 제2조)

○ 성별분석평가위원회 위원의 임기 구체적 명시(안 제4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성별영향분석평가법」 제10조의2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규제심사 : 해당 없음 [기획감사실-8272('17. 9.11.)]

라. 성별영향평가 분석 : 개선사항 없음 [주민복지과-53800('17. 9.29.)]

마. 입법예고 : 의견 없음 (예고기간 : '17. 9.21. ~ '17.10.11.)

성주군 조례 제 호

성주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성주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제3조 및 제3조의2로 하고,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(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) 군수는 「성별영향분석평가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성주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심의·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을 선정한다.

제3조(종전의 제2조)의 제목 "(설치 및 기능)"을 "(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분석평가"를 "「성별영향분석평가법」 제13조의2에 따라 분석평가"로, "및 개선 등"을 "등"으로, "성별 영향분석평가위원회"를 "성주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"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"대상 정책"을 "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"분석평가"를 각각 "성별영향분석평가"로 한다.

제3조의2(종전의 제3조)의 제목 "(구성)"을 "(위원회의 구성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자"를 "사람"으로, "위촉하고위촉직"을 "위촉하고 위촉직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"위원 :"을 각각 "위원:"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제4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③ 군수는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.

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2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3.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

제5조의 제목 "(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)"를 "(위원장의 직무 등)"으로 한다.

제6조제4항 중 "인정되면"을 "인정하는 경우에"로 한다.

제7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2조(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) 군수는 「성별영향분석평가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성주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심의·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을 선정한다.
제2조(설치 및 기능) ① 성주군수(이하 “군수”이라 한다)는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・조정하기 위하여 성별 영향분석평가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	제3조(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 ---- 「성별영향분석평가법」 제13조의2에 따라 분석평가 -- 등 ---------- 성주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----------.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・조정한다.	② ----------.
1. 대상 정책의 선정 등 분석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	1.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----------
2. 분석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	2. 성별영향분석평가----------
3. 분석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	3. 성별영향분석평가----------
4. (생 략)	4. (현행과 같음)
제3조(구성) ①・② (생 략)	제3조의2(위원회의 구성) ①・② (현행과 같음)
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위촉직 위원의 경우, 특정 성(性)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	③ ---------- 사람 ---------- 위촉하고 위촉직 ----------.
1. 당연직 위원 : 기획감사실장, 총무과장	1. ---- 위원: ----------
2. 위촉직 위원 : 성주군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,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	2. ---- 위원: ----------
제4조(위원의 임기)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,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.	제4조(위원의 임기) ①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<신 설>	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<신 설>	③ 군수는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. 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.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

제5조(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) ①·② (생 략)	제5조(위원장의 직무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제6조(회의) ① ~ ③ (생 략)	제6조(회의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.	④ ----------인정하는 경우에 ----------.
제7조(수당 등) 성주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「성주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	<삭 제>